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2. . .<br>(제 회)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 추가(안 제13조)

- 1) 보육교사의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현행 보육사업안내(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2) 이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대체교사의 고용 불안정 등 낮은 처우로 채용이 어려워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에 따라 대체교사 채용 및 관리를 안정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을 명시하고자 함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채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공백 방지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과태  
료 부과 기준 신설 (안 제27조 및 별표2)

-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조사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시  
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따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조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고, 영유아  
보육법 인용 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수정함
- 3)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때마련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실효성  
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 실태조사 참여를 유  
도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

제27조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을 나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br>(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6조제1항 | 5,000              | 10,000 | 10,000   |

별표 2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4호”를 “법 제56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5호”를 “법 제56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1호”를 “법 제5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

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2호”를 “법 제56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6조제2항제3호”를 “법 제56  
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부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 근거 법조문란까지 중 “법 제56조제1항”을  
각각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br>(단위: 만원)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                                   |                                     |                                     |
|--------------------------------------------------------------------------------------------------------------------------------------------------------------------------------------------------------------------------------------------------------------------------------------------------------------------------------|------------------|-----------------------------------|-------------------------------------|-------------------------------------|
| 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br>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br>경우(신설)                                                                                                                                                                                                                                                                                 | 법 제56조제1<br>항    | 5,000                             | 10,000                              | 10,000                              |
| <p>나.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br/>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br/>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br/>경우</p> <p>1)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br/>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br/>않은 경우</p> <p>2)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br/>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br/>을 위반한 경우</p> <p>3) 법 제15조의4제3항을 위반<br/>하여 영상정보를 60일 이상<br/>보관하지 않은 경우</p> <p>4) 법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br/>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내부<br/>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br/>우</p> | 법 제56조제3<br>항제4호 | 100<br><br>50<br><br>50<br><br>25 | 200<br><br>100<br><br>100<br><br>50 | 300<br><br>150<br><br>150<br><br>75 |
| 다.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br>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br>우                                                                                                                                                                                                                                                                                      | 법 제56조제3<br>항제5호 | 50                                | 100                                 | 150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br>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br>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br>항제1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br>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br>육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제3<br>항제2호 | 100                               | 200                                 | 300                                 |
| 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br>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br>않은 경우. 다만, 영유아 건강<br>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br>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br>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br>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br>제외한다.                                                                                                                                                                                | 법 제56조제3<br>항제3호 | 100                               | 200                                 | 300                                 |
| 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br>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br>폐지한 경우                                                                                                                                                                                                                                                                                 | 법 제56조제2<br>항    | 500                               | 500                                 | 500                                 |

|                                                         |                  |     |     |     |
|---------------------------------------------------------|------------------|-----|-----|-----|
| <u>아.</u>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u>법 제56조제2항</u> | 200 | 300 | 500 |
| <u>자.</u>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 <u>법 제56조제2항</u> | 200 | 300 | 500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br>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br><br>1. ~ 8. (생략)<br><br><u>&lt;신설&gt;</u><br><br>9. (생략)<br><br>② (생략) |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br>① -----<br>-----<br>-----<br>-----.<br><br>1. ~ 8. (현행과 같음)<br><br><u>9.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영</u><br><br><u>10. (현행 제9호와 같음)</u><br><br>② (현행과 같음)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u> -----<br>-----<br>--.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2 - 3551 |